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67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나. 추진근거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 · 양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라. 출연 사무내용

○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
- 예체능 분야 우수 고등학생 지원,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우수 대학생 지원
-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소상공인가정 자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지원
-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지원사업

- 멘토링, 진로특강, 인문학 특강 등 인재 지원 및 교류 활성화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마. 기관 개요

구분	재단현황
소 재 지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시 설 규 모	675㎡(이사장실, 사무국장실, 회의실(3), 창고, 사무공간)
조 직 규 모	이사장 등 비상근 임원(13명), 사무국 직원(12명)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소요예산 : 10,122,159천원

○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8,991,583천원, 인건비 616,677천원, 운영경비 450,776천원, 성과급 63,123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재)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서울특별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서울장학재단 현황

○ (재)서울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2010년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사회(비상임이사 11명, 비상임감사 2명)와 1국 2부의 사무국(정원13명, 현원12명)을 구성하여, 2021년에는 111억원의 예산(시출연금 101억원. 운영소득 및 민간기탁금 10억원)으로 18개 장학 사업에 5천 3백여 명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 연혁 〉

· 2008. 5.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시행
· 2008. 12.8	장학재단 설립허가 승인(시교육청)
· 2008. 12.24	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황영기 초대 이사장 취임)
· 2009. 1.8./1.13	재단설립등기 / 사업자 등록
· 2010. 3.1	재단 독립운영 개시
· 2012. 3.7	이경희 2대 이사장 취임
· 2014. 7.1	문미란 3대 이사장 취임
· 2015. 3.11	문미란 4대 이사장 취임
· 2018. 9.27	유광상 5대 이사장 취임(임기: 2018.9.27~20.9.26)

〈 서울장학재단의 조직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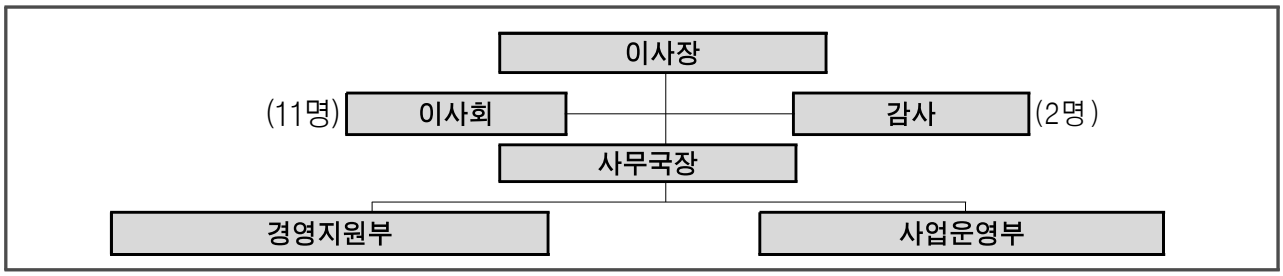

〈 서울장학재단의 인력현황 〉

구 분	계	상근임원	2급	3~4급	5급	6급
정 원	13	1	1	2	4	5
현 원	12	0	1	2	4	5
과부족	△1	△1	–	–	–	–

〈 2021년 서울장학재단의 시출연금 사업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실인원	연간지원액	2021년 예산액
출연금	대학	대학(등록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470명	최대2,000	3,806,500
		직업전문학교(등록금)(신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직업전문학교 학생	200명	1,000	201,100
		대학진로(학업장려)	학업·진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	375명	2,000	756,150
		공익인재(학업장려)	사회통합형 우수인재 대학생	60명	4,000	288,500
		서울평화희망(학업장려)	인권증진에 기여한 서울소재대학의 학생	10명	2,000	21,000
		희망플러스(학업장려)	저소득층 졸업예정자 대학생	285명	1,500	428,500
		서울우수인재(학업장려)	전공분야에 재능·학업의지를 가진 대학생	100명	4,000	415,375
		독립유공자후손(학업장려)	독립유공자 4~6대 후손인 대학생	100명	3,000	305,800
	고등	고교진로(학업장려)	학업·진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고등학생	1,328명	1,500	1,997,000
		예체능(학업장려)	저소득 가정의 예체능 특기 고등학생	150명	3,000	462,200
		하나고(학업장려)	사회적 배려계층	55명	1,200	61,600
		서울 꿈길(학업장려)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	100명	1,500	152,500
		소상공인 디딤돌(학업장려)	어려운 소상공인 가정의 중/고/대학생	100명	1,000	100,000
운영소득·기부	대학	청춘 Start(두산)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보육시설 포함)	40명	기존 1,000 신규 3,000	106,000
		유영아 학업(KSEC 대표)	성적이 향상된 저소득층 대학생	24명	2,000	50,850
	고등	청계천꿈디딤(운영소득)	저소득 특성화 고등학생	20명	1,000	20,000
		오토꿈이룸서울(오토인더스트리)	저소득 특성화 고등학생	30명	2,000	61,500
		서울희망SOS(운영소득+기부금)	긴급위기가정의 중/고/대학생	253명	1,000	253,500

나. 장학재단 출연의 필요성

○ 평생교육국은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적우수, 예체능 분야 재능, 공익활동 학생,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우수 학생의 발굴·육성' 등을 장학재단 출연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최근 장학사업 관련 많은 정책의 변경,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있어 출연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장학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과거 장학사업은 등록금 지원(성적 우수자에 대한 무대가성 포상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최근 학업장려(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지원 등)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 특히 최근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 국가의 등록금 지원 확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범위 확대(등록금→생활비+진로탐색활동 등), 학령인구의 감소 등 사업축소의 요인과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취약계층 증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증가, 학자금 상환 체납비율 증가 등 장학사업 확대의 요인도 있으며,
-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장학금 신청·교부방식의 개선, 비금전적 학업 지원(멘토링, 스터디, 강연 등) 요구 확대 등 장학범위 및 사업 추진방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장학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측면과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 및 청년부채 증가 등에 대응하여 교육기회 평등의 실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인재 발굴 등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강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이 양립하고 있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감안한 출연의 필요성,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고등학교 무상교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2019년 시작하여 2021년부터 전면 시행

※ **국가의 등록금 지원 확대** : 2022년 반값등록금 대상확대 - 중산층(중위소득 200%)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6구간 390만원으로, 7·8구간 350만원으로 인상

출처 :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1.8.27., '청년특별대책'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증가** : 67.6%(2014년) → 70.4%(2020년),

출처 : 국가통계포털, '취업률 및 진학률'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발췌

※ **대학생 학자금 상환 체납비율 증가**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체납비율 증가: 43.9%(2015년) → 73.6%(2020년)

(출처 : 국세청, '국가채무-체납-한국장학재단채권')

· 한국장학재단채권 규모 : 2조 5천억(2010년) → 10조 5천억(2020년)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현황-재무현황-보증채무-한국장학재단채권')

※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디지털정보화 수준 변동 현황 〉

	종합 수준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
2014	50.1%	72.3%	34.6%	47.7%
2015	52.4%	73.7%	37.4%	51.6%
2016	58.6%	84.5%	45.2%	59.0%
2017	65.1%	91.0%	51.9%	65.3%
2018	68.9%	91.1%	59.1%	67.7%
2019	69.9%	91.7%	60.2%	68.8%
2020	72.7%	93.7%	60.3%	74.8%

출처 :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의미

* 접근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접근 가능 정도

* 역량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기본적인 이용 여부

* 활용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양적, 질적 활용 정도

※ 학비부담 해소 필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채무 발생 사유**를 **20대는 학자금 마련**, 30대는 주거비로 보고함. 20대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은 대부분 30대로 이어지며, 청년들은 상당한 빚을 안고 노동시장에 진출함.

· 2021년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개정**(시행일 2022년 1월1일)으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성적기준도 폐지하여 학자금 대출 요건을 하향했으나, **학비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서울시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비부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장학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전공대학, 직업전문대학,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하였고, 장학재단은 이에 맞춰 역량과 사회공헌 의지 및 자기발전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왔음.

다. 장학사업 검토

1) 2022년도 장학사업 편성현황

○ 장학재단의 2022년 출연금(101억 2천 2백만원)은 금년(111억 1천 3백만원) 대비 8.9%(△9억 9천 1백만원) 감액한 수준이며,

- '운영비'는 4.9%(5천 3백만원) 증액하고, '사업비'는 8.3%(△8억 1천 5백만원) 감액한 수준이며, '예비비'는 전액(△2억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2022년 장학재단 예산편성(안) 개요 〉

(단위:천원)

구분	2021예산	2022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장학재단	11,113,268	10,122,159	△991,109	△8.9%
사무국 운영비	1,077,750	1,130,576	52,826	4.9%
장학사업 운영	9,806,609	8,991,583	△815,026	△8.3%
예비비 및 기타	228,909	-	△228,909	△100%

※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부금수입 및 2021년 결산잉여금(운용소득 등) 미확정에 따라 시출연금 예산(안)만 편성함(기부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21.11월중 편성 예정)

○ ‘운영비’(5천 3백만원, 증4.9%) 중 ‘인건비’(2천 7백만원, 증4.7%), ‘경비’(2천 6백만원, 증6.1%)는 증액하고, 성과급은 1천만원(△1.5%) 감액 편성하였음.

〈 2022년 장학재단 운영비 편성(안)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21예산	2022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사무국 운영비	1,077,750	1,130,576	52,826	4.9%
인건비	588,959	616,677	27,718	4.7%
경비	424,696	450,776	26,080	6.1%
성과급	64,095	63,123	△972	△1.5%

※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부금수입 및 2021년 결산잉여금(운용소득 등) 미확정에 따라 시출연금 예산(안)만 편성함(기부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21.11월중 편성 예정)

○ ‘사업비’는 ‘장학사업 심사 및 선정경비’를 전액(2천만원) 감액하고, ‘정보화사업비’ 20.8%(△3천 1백만원), ‘고교 장학사업’ 10.9%(△3억 4천만원), ‘대학 장학사업’ 6.5%(△4억 1천 7백만원)를 감액하는 등 전년(98억원) 대비 8.3%(△8억 1천 5백만원) 감액한 90억원 수준임.

〈 2022년 장학재단 운영비 편성(안)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21예산	2022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장학사업비	9,806,609	8,991,583	△815,026	△8.3%
대학생 장학사업	6,379,775	5,962,450	△417,325	△6.5%
고등학생 장학사업	3,108,300	2,768,600	△339,700	△10.9%
장학생커뮤니티지원사업	48,800	48,000	△800	△1.6%
정보화사업비	148,454	117,533	△30,921	△20.8%
심사및선정경비	20,280	-	△20,280	△100%
홍보사업비	101,000	95,000	△6,000	△5.9%

※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부금수입 및 2021년 결산잉여금(운용소득 등) 미확정에 따라 시출연금 예산(안)만 편성함(기부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21.11월중 편성 예정)

1) 심사 및 선정 경비

○ 장학재단은 '심사 및 선정 경비'를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각 사업별 심사·선정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음.

〈 2022년도 장학재단 장학사업비 중 "심사 및 선정경비"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2021 예산	2022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장학사업비	9,806,609	8,991,583	△815,026	△8.3%
심사및선정경비	20,280	-	△20,280	△100%
장학생선정위원회	18,000		△18,000	△100%
자문위원회	2,280		△2,280	△100%

※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부금수입 및 2021년 결산잉여금(운용소득 등) 미확정에 따라 시출연금 예산(안)만 편성함(기부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21.11월중 편성 예정)

- '심사운영비'는 6개 사업에 2천 5백만원, '장학생 선발 관리비'는 4개 사업 92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장학금별 심사비용을 별도로 관리하여 선발경비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부금·운영소득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은 현재까지 미편성하고 있어,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될 심사경비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 "장학생커뮤니티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학생 선발 관리비' 중 장학생 관리비는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개 사업에서 별도편성 후 증액하고 있는바, 증액 필요성과 증액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장학재단의 각 사업별 심사운영비 및 장학생선발관리비 편성 내역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심사운영비 1,000천원
·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심사운영비 5,250천원
·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심사운영비 3,400천원

·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심사운영비	1,000천원
·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	심사운영비	4,750천원
·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심사 운영비	9,500천원
· 희망플러스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비	600천원
· 서울희망 고교 진로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비	5,000천원
· 서울꿈길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비	2,500천원
·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비	1,100천원

2) 결산잉여금 편성의 적정성

○ 장학재단은 '2021년 결산잉여금' 및 '2022년 기부금수입'을 미확정하여, 이를 제외하여 '동의안의 출연금 규모'로 제출하였음. 2022년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 및 기부금의 규모(기부자는 대부분 기업으로 기업의 매출에 따라 기부금의 규모를 결정하여,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임)가 미확정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2021년 결산잉여금의 2022년 예산(안) 반영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장학재단의 최근 3년간 잉여금을 살펴보면, 최근 3년 평균 8억 3천만원(예산액의 6.4% 수준)이 발생하였고, 2020년도 장학재단의 불용률은 5.0% 수준임.

〈 최근 3년간 장학재단의 결산 후 잉여금 현황 〉

(단위:천원)

구분	수입액	지출액	결산잉여금	불용률
소계	38,782,206	36,287,109	2,495,097	6.4%
최근 3년 평균	12,927,402	12,095,703	831,699	6.4%
2020	12,933,072	12,283,966	649,106	5.0%
2019	12,726,800	11,810,326	916,474	7.2%
2018	13,122,334	12,192,817	929,517	7.1%

○ 장학재단은 '당해연도 잉여금'을 '결산 전에 예측(집행전망)'하여 예측잉여금과 출연금을 상계한 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 법령*은 '잉여금 예측치'가 아닌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 처리에 대해, '예측한 잉여금'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의 '잉여금의 처리 원칙'**

·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9p 발췌

- 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

- 순세계잉여금의 반영 :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정정하고, 보조금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예산은 차감 후 예산요구

※ **잉여금 관련 용어**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세입액 - 세출액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법정금액 - 지방채상환액 -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상잉여금의 출연금 조정 절차

- 2020회계연도 종료 → 2021년에 '2020회계연도 결산' (결산상 잉여금 산출) → 다음연도(2022년도) 예산요구액 조정(출연금과 결산상 잉여금 상계 후 출연금 확정)

○ 법령 등에 따르면 '2020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끝난 2021년도의 결산(2020회계연도 결산)으로 확정할 수 있고, 2021년도에 확정된 '2020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2023년의 출연금과 상계 또는 정정) 할 수 있는바,

- 장학재단의 2021년도 잉여금을 예측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운용방식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장학재단의 '예측 잉여금의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수년간 반복된 것으로 보이며, 출연금 규모의 확정과 예산운용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평생교육국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는바, 평생교육국과 장학재단의 잉여금관리와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장학재단은 「공익법인법」 및 교육청의 법령해석에 따라 사업연도의 12월 31일 기준 회계상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잉여금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장학재단의 출연금은 회계연도 종료 50일 전 서울시 예산(안)으로 제출되는바, 장학재단의 주장에 따라 '집행연도 말(12월 31일) 기준 잉여금'을 이미 제출된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고,

- 「공익법인법」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12월 31일)'이 아닌 '회계연도가 끝난 뒤'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시행령」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을 통해 산출된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공익법인법」)하고 있음.

○ 또한, 집행연도의 출납폐쇄일 이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불가능하여,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의 문구는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의 다음연도로 이월(편성방법)하여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학재단은 법령의 규정, 지침,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회계질서 혼란을 유발하는 아전인수격 자의적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대학 장학금

○ 장학사업 중 대학 장학사업은 전년(63억 8천만원) 대비 6.5%(4억 2천만원) 감액한 59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장학재단 장학사업비 중 "대학생 장학사업"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2021 예산	2022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비고
장학사업비	9,806,609	8,991,583	△815,026	△8.3%	
대학생 장학사업	6,379,775	5,962,450	△417,325	△6.5%	
서울희망대학장학금	3,806,500	3,806,500	0	0.0%	등록금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201,100	201,100	0	0.0%	등록금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756,150	755,250	△900	△0.1%	학업장려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88,500	284,000	△4,500	△1.6%	학업장려
서울평화희망장학금	21,000	20,000	△1,000	△4.8%	학업장려
청춘start장학금	106,000	-	△106,000	△100%	학업장려
유영아학업장학금	50,850	-	△50,850	△100%	학업장려
서울우수인재장학금	415,375	409,000	△6,375	△1.5%	학업장려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305,800	300,000	△5,800	△1.9%	학업장려
희망플러스장학금	428,500	186,600	△241,900	△56.5%	학업장려

※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부금수입 및 2021년 결산잉여금(운용소득 등) 미확정에 따라 시출연금 예산(안)만 편성함(기부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21.11월중 편성 예정)

○ 대학장학금 중 학비(등록금) 지원 사업은 2개(서울희망대학장학금,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장학금)로, 지원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인당 최대 2백만원 수준이나, 대학등록금은 장학금(최대 200만원)과 규모 상 큰 차이가 있고,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 장학금은 중복지급 금지로, 타 장학금의 혜택은 불가하여 장학금 외 학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학비지원 장학금 규모의 현실화 및 지급 사유의 다변화 등 장학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장학재단의 대학생 '학비 지원' 장학금 현황 〉

(단위:천원)

구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
2022년 예산편성안	38억 6백만원	2억 1백만원
2021년 예산액	38억 6백만원	2억 1백만원
지원대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직업전문학교 학생
지원인원(실인원)	2,470명	200명
지원금액(연간)	최대 2백만원	1백만원
지원금액(1회)	최대 1백만원	1백만원

〈 전국 및 서울시 소재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 평균액 〉

(2021년 6월 기준, 단위:원)

학제별 / 설립별			학교수	평균등록금	평균입학금
전국 대학 평균			387	5,588,621	179,277
	대학		219	6,027,830	146,455
		국공립	47	3,930,909	-
		사립	172	6,600,825	186,475
	전문대학		168	5,016,080	222,063
		국공립	9	2,148,644	-
		사립	159	5,178,388	234,632
서울시 소재 대학 평균			63	5,955,986	230,421
	대학		52	6,063,311	218,762
		국공립	7	3,766,151	-
		사립	45	6,420,647	252,792
	전문대학		11	5,448,635	285,538
		국공립	0	-	-
		사립	11	5,448,635	285,538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재단-대학별 평균등록금"(학위는 학사 기준)재구성

※ **평균등록금 : (회계연도별 등록금수입) ÷ (총학생수) (대학정보공시)**

※ <u>평균등록금은 장학금이 기반영된 금액</u>으로,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수입액은 "0"으로 계산되고, 총학생수에는 반영되고 있으며, 반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어, 평균 등록금은 실제 등록금 수준보다 낮게 산출되고 있음.

※ 학교별 정보는 본교와 분교의 통합수치 ※ 대학원대학 47개소 제외

○ 한편, 법령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선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최근 3년 물가상승률(2018년:1.5%, 2019년:0.4%, 2020년:0.5%)에 따라 2021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제시(1.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장학재단은 2013년 이후로 대학등록금 지원 장학금의 규모를 변경한 바가 없어, 학비장학금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바, 장학금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하이서울대학장학금의 1인당 지원액 변경현황 〉

(단위:천원)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1인당 지원액	최대 2백만원						학기당 1백만원		

출처 : 2015~20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최근 3년간 사업추진현황)

※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u>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4) 고등학생 장학금

○ 고등학생 장학사업은 전년(31억원) 대비 10.9%(△3억 4천만원) 감액한 27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전액 감액한 '오토꿈이룸 서울장학금'과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은 기부금 규모의 미확정으로 예산에 미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서울희망 SOS장학금'은 미정산된 결산상 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의 첨부자료에는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2022년도 장학재단 장학사업비 중 "고등학생 장학사업"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2021 예산	2022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장학사업비	9,806,609	8,991,583	△815,026	△8.3%
고등학생 장학사업	3,108,300	2,768,600	△339,700	△10.9%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1,997,000	1,997,000	0	0.0%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61,600	61,600	0	0.0%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462,200	460,000	△2,200	△0.5%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	61,500	-	△61,500	△100%
청계천꿈디딤장학금	20,000	-	△20,000	△100%
서울꿈길장학금	152,500	150,000	△2,500	△1.6%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100,000	100,000	0	0.0%
서울희망SOS장학금	253,500	-	△253,500	△100%

※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부금수입 및 2021년 결산잉여금(운용소득 등) 미확정에 따라 시출연금 예산(안)만 편성함(기부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21.11월중 편성 예정)

○ 장학사업 중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하나고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 대상 장학금)'은 매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본 장학사업의 예산 편성액의 산출기초 및 편성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의 집행내역 〉

(단위:천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7월말)		
애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90,000	69,326	77.0%	55,000	47,673	86.7%	61,600	42,693	69.3%

※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사유

- 2009년 1월 23일,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은평뉴타운지구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부지를, 하나학원은 학교시설을 건립하는'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서울시와 하나학원은 각각 학교 정원의 15%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하나고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 ‘서울희망SOS장학금’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결산상 잉여금’과 ‘운영소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잉여금과 운영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2년 예산(안)에는 미편성 상태이며,

-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 소상공인 가정 지원 등 본 장학금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장학재단은 예측한 잉여금을 2022년 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법령에 따라 결산이 끝나기 전 결산상 잉여금의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장학금의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짐.

○ 본 장학사업도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과 같이 운영소득과 결산잉여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증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5) 장학대상

○ 현재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시행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은 고교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초·중등과정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이라는 이유로 장학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오고 있음.

○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은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 및 대학생으로, 무상교육에 대한 장학재단의 기준은 모호한 것으로 보이며, 장학재단의 ‘초·중등생 제외 및 고교생 포함’이라는 기준이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장학재단의 기조와 같이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고교장학 사업을 중단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비지원만으로는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초·중등 학생들까지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춘 장학 정책으로서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장학사업은 ‘성적·재능 우수자 포상’의 개념에서 ‘교육권 보호’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고,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금(학비) 지원’에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교재비, 교통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장학방식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이에 장학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 모델개발, 장기적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개선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개선 시도를 예산부서가 감액 또는 전년수준 유지라는 방침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장학재단의 사회적 기능·역할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학사업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장학사업비의 증액 요구도 있는 한편, 감액대상 사업도 상존하고 있는바,

-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시 장학사업별 추진의 필요성, 장학방식의 적정성, 재원규모의 합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